

1. 개정이유

행복주택·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간사 관련 조항의 의미가 모호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, 위원 서약서 내 협의회 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간사 규정 명확화(안 제6조제2항)

- '행복주택·통합공공임대주택 담당 과장'을 '협의회를 담당하는 과장'으로 명시

나. 서약서 정비(안 별지)

- '행복주택'을 '행복주택·통합공공임대주택'으로 자구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국토교통부훈령 제1525호

행복주택·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

행복주택·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행복주택·통합공공임대주택 담당 과장”을 “협의회를 담당하는 과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서약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간사) ① (생략)</p> <p>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<u>행복주택·통합공공임대주택 담당 과장</u>으로 한다.</p>	<p>제6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협의회</u>를 담당하는 <u>과장</u>-----.</p>

서약서

본인은 행복주택·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위원으로서 협의회 회의 활동, 그 밖에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 다만,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.

20 년 월 일

서약자 소속 :

직위 :

성명 :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